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17.10.17.)됨에 따라 성주군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역 적용범위(안 제3조)

⑴ 성주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

⑵ 적용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 기술 및 디자인·전산·임상연구·회계, 설문조사 등 일반 용역

나. 연구결과의 공개 등(안 제4조)

⑴ 용역 종료 후 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⑵ 비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 공개될 경우 성주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 - 38735(2018. 7. 9.)〕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 (예고기간 : 2018. 8.23.~2018. 9.1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